



고용노동부

대구지방고용노동청

수신 사업장 대표 귀하
(경유)

제목 현장 예방점검의 날 계획 및 자가진단 실시 안내

1. 고용노동부는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 예방, 최저임금 준수,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노동관계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2. 이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「정기 근로감독」의 일환으로 귀 사업장에 대한 「현장 예방점검」 실시 계획을 안내해 드리니,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감독일정: 2024. 6. 17.(월) ~ 6. 28.(금)
 - * 구체적인 현장점검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
 - 감독내용: ① 서면 근로계약 체결, ② 임금명세서 교부, ③ 최저임금 지급, ④ 임금체불, ⑤ 출산·육아 지원제도
 - 준비사항: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임금지급 관련 서류, 자가진단표 등
3. 아울러, 근로감독 실시 전에 자율적으로 점검·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법 교육 및 자가진단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, 진단결과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먼저 개선하여 주시고, 그 자가진단표는 현장감독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만약, 현장감독 시 위법사항이 다수 적발되었음에도 ① 자가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거나, ② 보관한 자가진단표가 허위 또는 형식적(모두 '준수' 항목에 체크)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, 추후 산업안전보건분야 감독대상으로 추가 선정할 방침이오니 충실한 자가진단을 통해 위법사항은 미리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① (노동법 교육) 고용노동부 노동포털(<https://labor.moel.go.kr>) 접속 → 노동길라잡이 → 노동법 교육자료에서 「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」 동영상 시청
 - ※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관련 내용은 사업장 지도감독 → 「노무관리 가이드북」 참조
- ② (자가진단 방법) 고용노동부 노동포털(<https://labor.moel.go.kr>) 접속 → 사업장 지도감독 →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 → 「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」를 내려받아 자가진단을 실시하고, 그 자가진단표는 사업장 내에 보관

끝.